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저작물의 예시에 만화·웹툰 등 만화저작물 추가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83호)

2025.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저작물의 예시에 만화·웹툰 등 만화저작물 추가 (안 제4조제1항제4호의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조계원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2025. 1. 7.

다. 회 부 일: 2025. 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다양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만화·웹툰·애니메이션처럼 시각예술과 문학이 결합된 복합적인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로 분류되고 있음.

만화·웹툰·애니메이션 산업이 빠르고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들의 권리 보장과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저작물의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명확히 주장하고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저작물의 유형에 ‘만화저작물’을 별도로 명시하여 만화·웹툰·애니메이션 등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저작물의 예시에 만화·웹툰 등 만화저작물 추가 (안 제4조제1항제4의2호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저작물의 예시에 ‘만화·웹툰·애니메이션 그 밖의 만화저작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 하면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5. ~ 9. (생략)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만화·웹툰·애니메이션</u> <u>그 밖의 만화저작물</u> 5. ~ 9.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4조1)는 저작물을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

1)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음.

- 위 분류는 예시에 불과하고, 여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는지와
관계없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호됨.

○ 만화의 경우 스토리를 수반하므로 어문저작물과 미술저작물 양
쪽의 성질을 가지고, 스토리와 그림의 결합 정도, 창작 단계에
서의 관여 방법 등에 따라서 공동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게 되나,²⁾ 실무적으로는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주로 미술저작물로서 등록되고 있고, 애니메이션은 영상저
작물로 등록되고 있음.

[표 1] 저작물 분류표 : 저작물 종류별 예시 및 표현방식

구분	종류 (예시)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u>만화</u> , 로고, 포스터, 그림동화, 캐릭터쳐, 십자수 도안 등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오승종, 「저작권법 강의」 제3판, 박영사, 2020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仪, 약도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약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기획안, 데이터베이스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응용 프로그램, 원시코드, 소스코드, 폰트프로그램 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중 발췌

-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에 따른 저작물의 예시에 ‘만화저작물’을 별도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만화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창작자들이 저작물을 구분하여 등록함으로써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명확히 주장하고, 나아가 만화·웹툰·애니메이션 등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심사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만화·웹툰·애니메이션은 미술·어문·영상저작물이나 2차적저작물로 현행법 제4조의 예시규정 내에 충분히 포함 가능하므로 별도로 규정해야 할 새로운 저작물 형태라 보기 어려움.
 - 저작물의 종류는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형태·방법’이 아닌, 그 ‘저작물이 본래 가지는 기본 속성·성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바, 어문(글·스토리)·미술(그림)·영상(애니메이션)저작물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만화저작물에 대해 별도의 분류를 신설할 경우 기존 어문·미술·영상저작물 등과 분류의 위계가 맞지 않거나 분류 간에 중첩·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³⁾

- 또한, 현행법의 일부 규정은 특정한 분류의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⁴⁾ ‘만화저작물’을 예시에 신설할 경우 이러한 특례규정의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바, 저작자 등의 입장에서도 저작물을 등록하는 과정이나 해당 저작물에 적용될 특례규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봄.⁵⁾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독일·일본·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만화저작물’을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음.⁶⁾

문 의 처

02)6788-5376

3)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어문(각본)·음악(노래)·연극(춤)저작물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뮤지컬’이나 어문(뉴스기사)·사진(기사사진)·영상(뉴스방송)저작물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뉴스저작물’ 등의 경우에도 저작물의 예시로 신설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예시(분류)를 신설할 경우 기술·환경의 변화로 새로이 등장하는 저작물 형태에 따라 계속하여 저작물의 분류가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4) 어문·미술·영상저작물 등 저작물 분류에 따른 규정 적용의 차이는 [참고1] 참조

5) 저작권 등록시 만화저작물 구성요소별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록저작물 종류(만화 완성 이전에 개별 캐릭터를 등록시 만화저작물인지 미술저작물인지 여부 등) 판단에 혼란 가능성

6) [참고2] 해외사례 참조

참고1

어문 · 미술 · 영상저작물별 적용 규정 구분표

구분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저작인격권	-	○ 제11조제3항 - 원본 양도 시 공표 추정	-
저작재산권	-	○ 제19조 - 전시권 부여	-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제33조제2항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허용	○ 제35조제1항 - 원본의 소유자에 의한 전시 허용 ○ 제35조제2항 -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된 미술저작물 복제 허용 ○ 제35조제3항 - 미술저작물의 전시·판매에 수반되는 책자의 복제 및 배포 허용	○ 제29조제2항 - 반대급부 없는 공연 허용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제39조 - 생존기간 + 사후 70년	○ 제39조 - 생존기간 + 사후 70년	○ 제42조 - 공표 후 70년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제99조 제2항 - 각색 허락 추정 ○ 제100조 제2항 - 양도 추정 규정과의 관계	○ 제100조 제2항 - 양도 추정 규정과의 관계	○ 제99조 - 저작물의 영상화 ○ 제100조 -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제101조 - 영상제작자의 권리
기타	-	-	○ 제104조의6 - 영화관에서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참고2

해외사례

국가명	내용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 저작권의 보호대상: 총칙 (a)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개발될 유형적인 표현매체로서,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에 의하여 그로부터 저작물을 지각, 복제, 또는 그 밖에 전달할 수 있는 것에 고정된 독창적인 저작물은 이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은 다음의 범주를 포함한다.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그에 수반되는 가사를 포함한다; (3) 연극저작물, 그에 수반되는 음악을 포함한다; (4) 무언극 또는 무용저작물; (5)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 (6) 영화와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 (7) 녹음물; 그리고 (8) 건축저작물. (b) 어떠한 경우에도,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그것이 그 저작물에 기술, 설명, 예시, 또는 수록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관념, 절차, 공정, 체제, 조작 방법, 개념, 원리, 또는 발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독일 저작권법	제2조(보호저작물) ① 보호되는 문학, 예술 및 예술저작물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것이 해당된다. 1. 문자저작물, 연설 및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무용저작물을 포함한 무언저작물 4. 미술저작물 : 이에 건축 및 응용미술저작물과 이들의 초안이 포함된다. 5. 사진저작물 : 이에 사진저작물과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저작물이 포함된다. 6. 영상저작물 : 이에 영상저작물과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저작물이 포함된다. 7. 도면, 지도, 표, 약도, 도표 및 입체적 저작물과 같은 학술적이거나 기술적인 종류의 표현물 ② 본법상의 저작물이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한한다.
일본 저작권법	제10조(저작물의 예시) ① 이 법률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소설, 각본, 논문, 강연 기타 언어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무용 또는 무언극저작물 4. 회화, 판화, 조각 기타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지도 또는 학술적인 성질을 가지는 도면, 도표, 모형 기타 도형저작물 7. 영화저작물 8. 사진저작물 9. 프로그램저작물 ②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 및 시사보도는 전항 제1호에 게시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9호에 게시하는 저작물에 대한 이 법률에 의한 보호는 그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 및 해법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들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프로그램 언어 :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의 문자, 기타 기호 및 그 체계를 말한다. 2. 규약 : 특정의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전 호의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말한다. 3. 해법 :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전자계산기에 대한 지령의 조합방법을 말한다.

영국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제3조(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 (1) 이 편에서- "어문저작물"이란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이외에, 저술되고 말해지거나 노래되는 저작물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표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편집물, (b) 컴퓨터 프로그램, (c)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예비 도안 및 (d) 데이터베이스; "연극저작물"은 무용 또는 무연극의 저작물이 포함된다; 그리고 "음악저작물"이란 음악과 함께 노래되고 말해지거나 또는 실연되는 말 또는 행동을 제외한, 음악으로 이루어진 저작물을 의미한다. (2) 저작권은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기록될 때까지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에 존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편에서 그러한 저작물이 창작된 시기는 저작물이 그와 같이 기록된 때를 말한다. (3) 제2항의 목적상, 저작물이 저작자에 의하여 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 기록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리고 저작자가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의 어떤 규정도 기록된 저작물과는 별도로,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하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A조(데이터베이스) (1) 이 편에서 "데이터베이스"란 다음과 같은 독립적인 저작물,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의 집합을 의미한다- (a) 체계적이거나 규칙적인 방식으로 배열될 것, 또한, (b)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근가능할 것 (2) 이 편의 목적상,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선택이나 배열을 이유로, 데이터베이스가 저작자 자신의 지적창조물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어문저작물은 창작물이다. 제4조(미술저작물) (1) 이 편에서, "미술저작물"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예술적 가치와 상관없이, 도형저작물, 사진, 조각 또는 콜라주, (b) 건축물 또는 건축물을 위한 모형으로서의 건축저작물, 또는 (c) 미술공예저작물. (2) 이 편에서- "건축물"은 고정 구조물 및 건축물 또는 고정 구조물의 일부를 포함한다;"도형저작물"이란 다음을 포함한다- (a) 회화, 소묘, 도해, 지도, 도표 또는 도면 및 (b) 판화, 동판화, 석판화, 목판화 또는 이와 유사한 저작물; "사진"이란 빛이나 기타 방사선의 기록물로서, 그 위에 영상이 나타나거나 그로부터 영상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나타나는 매체를 의미하고, 그 자체로 영화의 일부분이 아닌 것을 말한다;"조각"은 조각을 목적으로 제작된 주물이나 모형을 포함한다. 제5A조(녹음물(음반)) (1) 이 편에서 "녹음물"(음반)이란- (a) 소리의 기록물로서, 그로부터 소리가 재생될 수 있거나, 또는 (b)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록물로서, 그로부터 저작물이나 그 일부를 복제한 소리가 제작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어느 매체 위에 그 기록물이 제작되었는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리가 복제되었거나 제작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2) 녹음물이 기존의 녹음물로부터 취한 복제물이거나 또는 그러한 범위까지는 동 녹음물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5B조(영화) (1) 이 편에서 "영화"란 어떤 매체 위에 있는 기록물로서, 그로부터 움직이는 영상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영화의 사운드트랙은 이 편의 목적상 영화의 일부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3) 제2항의 일반성에는 영향을 미침이 없이, (2)항은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a) 이 편에서 영화상영이란 영화에 수반된 사운드트랙을 연주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	--

	리고 (b) 녹음물을 연주하는 것은 영화에 수반된 사운드트랙을 연주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영화가 기존의 영화로부터 취한 복제물이거나 또는 그러한 범위까지는 동 영화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어느 규정도 녹음물로서 영화의 사운드트랙에 존재하는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방송) (1) 이 편에서 "방송"이란 시각 영상, 소리 또는 기타 정보의 전자적 송신으로서, (a) 공중의 구성원이 동시에 수신하도록 송신되고, 합법적으로 수신될 수 있거나, 또는 (b) 공중의 구성원에게의 제공을 위해 송신하는 자에 의해서만 정하여진 시간에 송신되는 것으로, 다음 (1A)항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방송에 관한 규정은 그에 따라 해석한다. (1A)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인터넷 송신도 "방송"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a) 인터넷과 기타 수단을 통해 동시에 일어나는 송신, (b) 생방송의 동시송신, 또는 (c) 송신을 책임지고 있는 개인이 제공한 프로그램서비스, 즉 그가 결정한 예정된 시간에 송신하는 서비스의 일부를 형성하는 기록된 동영상 또는 소리의 송신. (2) 암호화된 송신물은 해독장치가 그 송신을 하는 자나 또는 그 송신의 내용을 제공하는 자가 또는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공중의 구성원에 해독장치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합법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 이 편에서, 방송을 하는 자 또는 방송되는 송신을 하는 자라 함은- (a) 그 내용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의 책임을 있다면,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자, 및 (b)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이를 전송하는 자와 함께 송신에 필요한 조정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 편에서 방송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 (4) 이 편의 목적상, 무선방송이 행해진 장소는 방송을 제작하는 자의 통제와 책임 하에, 프로그램전달신호가 중단됨이 없는 통신네트워크 속으로 들어오는 곳이다(위성송신의 경우, 지구로 향하고 위성으로 이끄는 네트워크를 포함). (4A) 제3항과 제4항은 제6A조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5) 이 편에서 방송의 수신은 전기통신 시스템에 의해 중계되는 방송의 수신을 포함한다. (5A) 수신 및 즉시 재송신에 의한 방송 중계는 이 편의 목적상 재송신되는 방송 제작과는 별도의 행위로서 간주된다. (6) 다른 방송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그러한 범위까지의 방송에는 저작권이 존속하지 아니한다. 제6A조(일정한 위성방송의 보호수단) (1) 본조는 위성송신을 통한 방송이 제작되는 장소가 EEA 이외의 국가에 위치하고 그 국가의 법이 적어도 다음의 보호 수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된다- (a) 어문, 연극, 음악과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 및 영화와 방송에 관해 (공중전달에 의한 침해) 제20조에 의해 부여된 것과 동일한 무선방송과 관련된 배타적 권리; (b) 제182(1)(b)조(생방송 실연을 위해 필요한 동의)에 의해 실연자에게 부여된 것과 동일한 무선생방송과 관련된 권리; 그리고 (c) 녹음물의 무선방송과 관련해 녹음물의 저작자 및 실연자가 각각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2) 프로그램전달신호가 위성("업링크 스테이션")에 송신되는 장소가 EEA 국가에 소재한 경우- (a) 그러한 장소는 방송이 제작되는 곳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b) 업링크 스테이션을 운용하는 자는 방송을 제작하는 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3) 업링크 스테이션이 EEA 국가에 소재하지 않으나, EEA 국가에 위치한 자가 방송 제작을 촉탁하는 경우- (a) 그는 방송을 제작하는 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	--

	(b) 그가 유럽경제지역(EEA)에 주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장소는 방송이 제작되는 장소로 취급되어야 한다. 제7조(유선 프로그램) 폐지. 제8조(발행물) (1) 이 편에서 "발행물"이란 어느 발행물의 판면배열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발행물을 의미한다. (2) 기존 발행물의 판면배열을 복제하는 경우 또는 그와 같은 범위에서는, 그 발행물의 판면배열에 저작권이 존속하지 아니한다.
중국 저작권법	제3조 이 법에서 저작물이란 문학·예술 및 과학영역의 독창성이 있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된 지적성격을 말하며, 아래의 저작물을 포함한다. 1. 어문저작물 2. 구술저작물 3. 음악·희극·곡예(曲艺)·무용·잡기예술(杂技艺术)저작물 4. 미술·건축저작물 5. 사진저작물 6. 시청각저작물 7. 기술설계도·제품설계도·지도·설명도 등 도형저작물 및 모형저작물 8. 컴퓨터 소프트웨어 9. 저작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기타 지적성과
대만 저작권법	제5조 ①이 법에서 저작물이란 다음에 예시하는 바와 같다.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무용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사진저작물 6. 도형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녹음저작물 9. 건축저작물 10.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